

A Study on the Translation Strategies of Legal Terminology in Korean-English Translation – Centered around Legal Term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법률 전문용어의 한영 번역전략에 관한 연구 – 지식재산 법률용어를 중심으로

Jeong Mok Seo¹

서정목¹

¹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Daegu Catholic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jmseo@cu.ac.kr

Abstract: When translating legal texts from one legal system to another, not only the understanding of source language and target language but also legal factors beyond the linguistic level must be considered in the translation process. Therefore, the analysis of translation strategies based on the differences of languages and legal systems is a meaningful study in legal translation. In this study, the translation strategies applied to the translation of legal term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are analysed for the Korean-English dictionary of intellectual property by th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as a parallel corpus of Korean and English. There are various translation strategies between source language and target language, which are located at the two extremes of general translation strategies. In the translation of legal term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there are also specific translation strategies for legal translation. The analysis of the translation strategies in this study is based on such strategies as (1) functional equivalents, (2) borrowings, (3) literal equivalents, (4) transposition, (5) expansion, (6) modulation and (7) descriptive paraphrasing.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translation strategies for the corpus presented above, the strategy of literal equivalents occupies an overwhelming proportion of all the translation strategies, followed by descriptive paraphrasing. This shows that the translation of legal term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oriented to formal equivalence. Therefore, the translation strategies of legal terms analysed in this study can be used not only as a guideline in the translation process of legal term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but also as a useful tool for analysis for the result of the legal translation.

Keywords: Terminology, Pat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Legal Translation, LSP, Translation Strategy

요약: 하나의 법률체계에서 다른 법률체계로 법률 텍스트를 번역할 때 출발언어와 목표언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언어적 수준을 넘어서는 법률적인 요소도 번역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언어와 법률체계의 차이에 기반한 번역전략의 분석은 법률번역에 있어서 의미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병렬코퍼스로서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행한 지식재산 법률용어 사전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법률번역에 적용된 번역전략을 분석한다. 출발언어와 목표언어 사이에는 다양한 번역전략이 존재하며, 이들은 일반적인 번역전략의 양 극단에 위치한다. 법률번역에는 법률번역을 위한 특수한 번역전략이

Received: March 05, 2023; 1st Review Result: April 21, 2023; 2nd Review Result: May 18, 2023
Accepted: June 30, 2023

또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지식재산 관련 법률번역의 전략분석은 (1) 기능적 증가, (2) 차용, (3) 축어적 증가, (4) 치환, (5) 확장, (6) 변조, (7) 기술적 바꿔쓰기를 기반으로 한다. 위에서 제시한 코퍼스에 대한 번역전략을 분석한 결과, 축어적 증가 전략이 여러 번역전략 가운데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적 바꿔쓰기가 그 뒤를 따른다. 이는 지식재산 관련 법률 전문용어의 번역이 형식적 증가를 지향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법률용어의 번역전략은 법률용어 번역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관련 법률용어 번역결과의 분석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전문용어, 법률번역, 지식재산권, 특수목적언어, 번역전략

1. 서론

오늘날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글로벌 사회에서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은 그 중요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으며, 그러한 지식재산의 국제화와 교류는 지식재산을 포함한, 통상 특허번역이라고 불리는 번역과정과 번역결과 역시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한국은 첨단산업화와 IT 기술역량, 그리고 한류의 영향으로 국제무대에서 지적재산권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음에 따라, 한국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한국어로의 지적재산과 관련되는 번역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영어와 한국어는 언어체계가 서로 다르고,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들과는 법률체계 역시 서로 다르므로 지식재산 법률번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하나의 법률체계에서 다른 법률체계로 번역할 때에 언어 자체의 이해와 함께 언어적 차원 이상의 법률적인 요인들이 번역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법원 국제 지식재산권 연구센터에서 2017년에 발행한 지식재산 법률용어 사전에서 표제어로 제시된 법률용어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를 출발언어로, 영어를 목표언어로 하여 적용된 번역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법률번역에 어떠한 번역전략이 적용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식재산 관련 법률상황에 있어 추가적인 법률용어의 수용과 국내 지식재산권의 해외출원에 있어 법률번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전문용어 번역의 일관성과 다양성의 최소화를 위한 효과적인 번역기제로 기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 특수목적언어로서 지식재산 법률용어의 번역

2.1 법률번역과 지식재산 번역

Black's law Dictionary(2009)에 따르면, 법률이란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힘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거나, 그러한 사회 내에서 힘에 의해 지지되는 사회적인 압력을 통하여 인간의 행위와 관계를 규정하는 체제로 정의된다[1]. 이렇게 한 관할법역, 사회의 지배적인 힘에 의해 규정되는 법률행위나 관계는 언어를 매개로 하여 전달되고 준수된다. 법률은 언어를 매개로 하여 표현되며, 이렇게 법률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언어가 바로 법률언어이다. 법률과 법률언어의 성격은 법률번역이 더욱 복잡하고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데, 이는 번역과정에서 각각 두 개의 개별언어와 두 개의 법률체계가 교차하기 때문이다[2]. 따라서 법률번역에는 개별언어의 비교와 법률체계의

비교 과정이 개입되는 것이다. 개별언어의 차원에서 번역에는 당연히 논리적으로 출발언어와 목표언어와 같이 두 개 언어가 필연적으로 관여한다. 그리고 번역의 대상도 문학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번역, 특허, 의장, 상표와 관련되는 문서의 번역을 주로 하는 지식재산 번역, 그리고 이공계의 기술을 위주로 하는 기술번역, 그리고 계약서, 협정, 정관 등 법률 규정, 법률문서 등을 출발언어에서 목표언어로 번역을 하는 법률문서 번역이 있다. 특히 하나의 사회에서 규범화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효과, 효력을 지닌 법률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과 결과가 법률번역이다.

지식재산 번역은 지식재산을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본적인 필요성에 기초한다. 그 법률적인 이유로는 각국에서 취득한 특허는 각각 독립적이고, 타국에서의 특허의 운명과 관계없이 발생, 존속 및 소멸한다는 각국 특허 독립의 원칙, 즉 1국 1특허주의와 특허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국의 언어로 필요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자국어주의를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3]. 따라서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번역은 국내출원의 뒤를 따르는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에서 세계 4위를 차지하였고, 이는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4].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어에서 영어로 정확한 특허 및 지식재산의 번역을 위한 당위성이 존재한다 할 것이다.

2.2 특수목적언어와 전문용어

특수목적언어(Language for Specific Purposes, LSP)란 말 그대로 전문영역에서 사용되는 하위언어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의료, 법률, 정보통신, 공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지닌 언어이다. 특수목적언어는 어휘, 의미적 특징, 통사적 특징, 문체적 및 화용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한 분야의 특수목적언어는 다른 분야의 특수목적언어와 구별된다.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특수목적언어에 구체적인 개별언어를 적용한다면, 예를 들어 특수목적언어에 영어라는 개별언어를 적용한다면, 특수목적영어가 된다[5]. 특수목적영어는 학문목적의 영어(English for Academic Purposes)와 직업목적의 영어(English for Occupational Purposes)로 양분된다. 학문목적의 영어로는 (1) 과학 기술, (2) 의료, (3) 법률, (4) 경영, 재무, 경제로 구분되고, 직업목적의 영어로 전문직종 목적의 영어가 있고, 일반직업 목적의 영어가 있다[6]. 이러한 특수목적영어는 주로 전문용어들로 구성되는데, 그 특성으로는 다음과 같다. 전문용어는 첫째, 일 대 일 대응성에 따른 항상성과 안정성, 둘째, 명사구로서의 합성어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전문용어는 다의성을 가지는 일반 단어와는 달리 표상하는 개념과 일 대 일의 대응성을 가지므로 전문용어와 개념 사이에는 일의성, 투명성과 명시성, 간결성 등의 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문용어는 품사가 대체로 명사 또는 명사구이며 그 구조는 합성어인데, 그 이유로는 전문용어의 주요 목적이 개념의 전달인데 개념적 속성과 다른 개념과의 연관성이 잘 드러나는 합성어가 전문용어의 생성에 유리하기 때문이다[7]. 전문용어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전문용어를 체계적으로 집성하고 기술하는 전문용어 사전은 사회적으로 특정 집단들의 특수언어 형성에 필요한 용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설명하는 참조체계로서 기능을 한다[8].

전문용어 사전 내지 전문용어 목록은 개별언어로 구성되는 사용역으로서 특정분야의 특수목적언어로 구성된 전문용어의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수행한다. 법률번역의 경우를

예로 들면, 법률 전문용어의 목록이나 사전에 기반하여 이에 대응하는 목표언어에서 비교가능성과 등가라는 기제를 통하여 출발언어에 목표언어에 있어서 전문용어의 번역이 가능해지고 목표언어에서의 법률 전문용어 목록 내지 사전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2.3 지식재산 관련 법률용어

지식재산 기본법 1조 제1호에 따르면,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것에 대한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중 산업분야의 산업재산권에 특허법, 실용실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이 속한다. 그 중에서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법률의 명칭이 바로 특허 내지 특허법이다. 특허란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발명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댓가로 일정한 기간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는 국가와의 공적 계약을 말하며,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자 또는 그로부터 적법하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는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특정한 국가 내에서 특허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9]. 이러한 특허와 관련되는 권리, 즉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과 같은 권리를 다른 나라에서도 독점적, 배타적 권리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국의 언어에서 특허와 관련되는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의 언어로 특허 및 지적재산과 관련되는 문서를 번역할 때에 이러한 번역과정을 지적재산 번역이라고 한다.

특허는 발명분야에서 도출된 과학기술용어를 포함하면서 특허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요구사항들을 정의하는 법규, 규정, 사법적인 의견도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허문서는 기술문서와 법률문서 사이에서 이들이 결합한 기술적인 혼합체가 된다[10]. 필연적으로 특허 및 지적재산 번역은 특허 및 지적재산 관련 문서에 담긴 법률적, 기술적인 내용을 출발언어에서 목표언어로 번역하는 과정과 그 결과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특허 및 지식재산 번역은 관련 대상제품에 관한 기술 전문용어, 그리고 특허 및 지적재산의 취득과 관련되는 법률용어의 번역을 위주로 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허 및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률 전문용어를 대상으로 번역전략을 다룬다.

3. 법률 전문용어의 등가와 번역전략

3.1 등가의 개념과 정의

번역과정에는 출발언어와 목표언어와 같이 2개 이상의 언어가 개입하므로 무엇을 어떻게 무엇으로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번역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무엇으로의 전이, 의미 재조정의 기준이 바로 등가이다. 법률번역은 그 법이 지배하는 관할권역 내에 통용되는 제도적 번역에 속하므로, 상이한 법률체계에서 출발언어와 관련되는 법률적인 개념을 목표언어의 언어체계와 법률체계에서 정확하게 대응하는 완전한 등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적 번역(technical translation)은 특수화된 번역의 부분인 반면, 제도적 번역(institutional translation)은 정치, 상업, 재무, 정부 등과 관련되는 영역에 속한다. 제도적 번역에는 문화적인 요소들이 개입하면서 전이과정에서 의미의 추가와 삭제가 이루어진다[11].

법률번역은 출발언어에서의 원본대로 출발언어의 전문용어, 텍스트의 의도, 문체,

형식에 충실하면서도, 목표언어에서 동일하게 이해, 수용되도록 하는, 번역이 추구하는 방법과 절차로는 기능적인 등가를 추구하는 것이다. 기능적 등가어를 적용하는 전략은 출발언어의 용어에 대한 등가로 목표언어의 용어를 사용하여 목표언어 및 목표언어의 법률체계를 지향한다. 그러나 출발언어와 목표언어 사이에서 완전한 등가어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등가의 종류로 유사등가, 부분등가, 비등가가 있다면, 문제시되는 것은 바로 상이한 법률체계에 속하는 두 개의 개념이 핵심자질의 일부만을 공유하거나 공유하지 않는 비등가의 경우이다. 법률번역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용, 신조어와 같은 다양한 번역전략을 활용한 언어적 등가어, 즉 번역전략이 제시된다[12]. 따라서 출발언어에서 목표언어로 법률 전문용어를 번역하는데 있어 법률체계의 차이로 인한 번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확한 번역을 위하여 적용되는 번역전략들이 바로 Sarcevic(1997), Varó & Hughes(2002), Januleviciene & Rackeviciene(2011) 등이 제시하는 법률번역에 적용되는 번역전략이다.

3.2 법률 전문용어의 번역전략

번역과정이란 출발언어에서 목표언어로의 전이나 의미 재조정과정을 거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번역전략이 적용된다. 법률과 관련하여 전문용어이든 법률 텍스트이든 일반 번역과 마찬가지로 법률번역 내지 법률 전문용어의 번역에도 번역을 위한 전략이 존재한다. 법률 전문용어의 번역에는 타협과정이 개입하며, 이러한 타협과정으로 법률번역에 있어서 다른 언어체계, 다른 법률체계에 의한 비등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번역전략이 적용된다[13]. 번역에서의 타협이란 출발언어와 목표언어 사이에서 적절한 번역전략을 적용하기 위한 모색의 과정이다. 번역전략의 양 극단에는 형식적 등가와 역동적 등가가 위치하며, 형식적 등가의 대표형은 차용이며, 역동적 등가의 대표형은 기능적 등가가 된다. 법률 전문용어의 번역도 일반 번역전략과 마찬가지로 양 극단의 사이에서 다양한 번역전략이 존재한다. 당연히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번역도 법률번역의 범주에 속하므로, 아래에서 제시하는 법률번역의 전략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Sarcevic(1997), Varó & Hughes(2002), Januleviciene & Rackeviciene(2011)에 따르면, 번역의 의도, 기능 등에 따라 출발언어와 목표언어 사이에 여러 번역전략이 제시된다. 먼저, 법률 전문용어의 번역에 있어 Sarcevic(1997)가 제시한 번역전략은 첫째, 어휘적 확장(lexical expansion), 둘째, 기술적 바꿔쓰기와 정의(descriptive paraphrase and definition), 셋째, 중립적 용어(neutral terms), 넷째, 차용(borrowings), 다섯째, 축어적 등가(literal equivalent)이다. 기술적 바꿔쓰기와 정의는 출발언어와 목표언어에서 법률 전문용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목표언어의 사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용어로 의도된 의미를 기술하는 전략이다. 차용이란 출발언어의 법률체계에 있는 법률용어를 차용하여 법률 전문용어를 그대로 목표언어에 사용하는 번역전략이다. 축어적 등가는 목표언어에서의 번역자가 차용전략이나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전략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사용되는 전략으로서 신조어를 창조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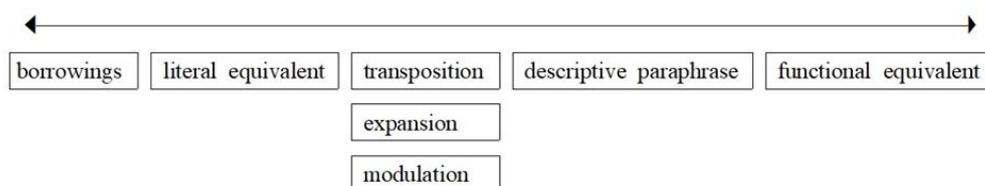
Varó & Hughes는 첫째, 치환(transposition), 둘째, 확장(expansion), 셋째, 변조(modulation)와 같이 세 가지의 번역전략을 제시하였다. 치환이란 언어 간 문법적인 범주의 전환으로 번역 시에 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법률 전문용어의 번역에 있어서는 문장이 아닌 단어나 구의 범위로 그 번역의 영역이 제한되므로 치환이 적용될 가능성은 적다.

확장은 출발언어에서 목표언어로 번역 시에 모호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어휘를 추가하는 번역전략이다. 변조란 의미범주뿐만 아니라 제유, 환유를 비롯하여 사고가 표현되는 과정으로서의 번역전략을 말한다[15].

Januleviciene & Rackeviciene(2011)도 법률 전문용어의 번역전략으로 제시한 기제들은 기능적 등가(functional equivalence), 형식적 등가(formal equivalence), 차용(borrowing), 기술(description)로서 그 기본적인 개념은 위의 번역전략과 유사하다. 다만 Januleviciene & Rackeviciene(2011)가 제시한 개념으로 기술이란 몇몇 단어로 구성되는 용어상의 등가 대상을 배열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장점으로는 용어의 투명성으로서 목표언어의 사용자들이 다른 원천에 대하여 참조하지 않더라도 그 의미 파악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들 수 있다[16].

27개국으로 구성되는 유럽연합(EU)은 유럽연합법(European Union Law)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자적인 법률체계이다. 기본법의 주가 되는 출전은 유럽연합의 조약이며, 2차 출전은 그 조약의 기본이 되는 명령과 규칙이다[17]. 유럽연합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이러한 공동의 법률은 회원국들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필연적이라 할 것이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내에서 번역업무는 번역총국(Directorate-General for translation)이 담당하고 있으며, 번역총국이 제시하는 번역전략으로는 (1) 차용(borrowing), (2) 귀화(naturalizations), (3) 축어적 등가(literal equivalent), (4) 치환(transposition), (5) 확장(expansion), (6) 변조(modulation), (7) 기능적 등가(functional equivalent)를 들 수 있다. 차용은 국가기관이나 국가의 행정기관, 단위와 같은 경우 그대로 목표언어에서 사용하는 번역전략이다. 축어적 등가는 목표언어의 수용자가 일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목표언어의 수용자가 자신의 법률체계에 친숙한 제도와 관련지어 이해시키기 위한 번역전략이다. 치환은 출발언어의 의미를 보존하면서 목표언어에서의 문법 범주를 변경하는 전략이다. 확장은 출발언어에 없는 어휘를 목표언어에서 추가하여 확장하는 개념의 번역전략이다. 변조는 번역과정에서 의미의 전개과정을 변경하는 번역전략이다. 기술적 바꿔쓰기는 출발언어에서의 용어들을 설명하면서 중립적이고 범위가 보다 큰 목표언어에서의 등가어를 제시하는 번역전략이다. 기능적 등가는 출발언어에서의 개념에 대하여 목표언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념의 기능을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하는 번역전략이다[18].

Sarcevic(1997), Varó & Hughes(2002), Januleviciene & Rackeviciene(2011), 그리고 유럽연합 번역총국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번역전략 중 그 개념상 중복되는 번역전략을 제외하고 정리하면, [그림 1]과 같이 7개의 법률번역 전략을 설정할 수 있다. 형식적 등가, 또는 이국화 전략의 극단에는 차용이 위치하며, 역동적 등가, 또는 자국화 전략의 반대 방향의 극단에는 기능적 등가가 위치한다. 이러한 번역전략들을 출발언어 지향에서 목표언어 지향의 양 극단을 중심으로 배치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양 극단 사이의 제 번역전략
[Fig. 1] Translation Strategies between the Two Extre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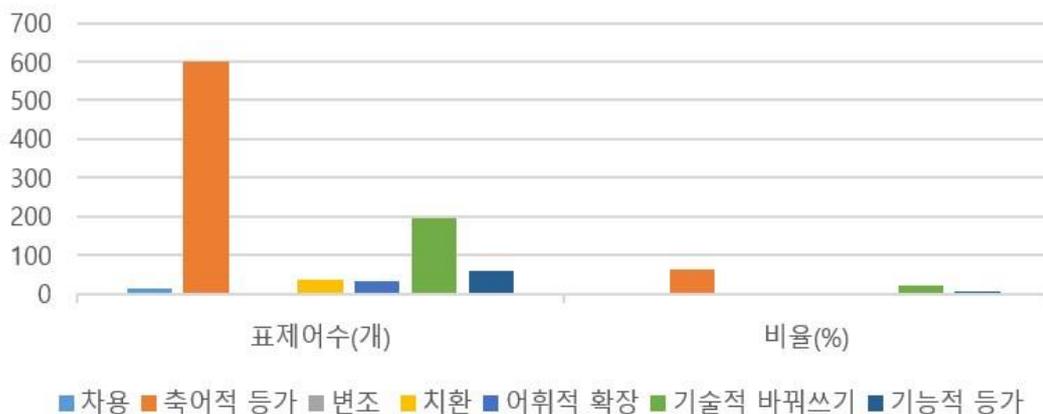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 법률용어 사전에서 제시된 한국어 표제어에 대하여 영어로 번역된 전문용어를 대상으로 위에서 언급한 7개의 번역전략을 적용하여 각각 한국어로 된 법률 전문용어가 어떠한 번역전략이 적용되어 영어로 번역되었는지를 살펴본다.

4. 한영 지식재산 법률 전문용어의 번역전략의 분석

본 연구에서 코퍼스로 선정된 지식재산 법률용어 사전에서는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표제어로 총 942개로 구성되는 단어들이 제시되었다[19]. 이들은 대부분 이에 대응하는 한자표기가 가능할 정도로 한자어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단어들이 법률용어로서 한자표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러한 어휘들의 함축성을 보여준다. 코퍼스로서 본 사전에 기반하여 출발언어인 한국어로 된 표제어들을 대상으로 각기 어떠한 번역전략이 적용되어 목표언어인 영어로 번역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위의 사전에 표제어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번역전략, 즉 차용, 축어적 등가, 치환, 확장, 변조, 기술적 바꿔쓰기, 기능적 등가를 적용하여 번역전략을 분석하면, [표 1]과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출발언어인 한국어로 제시된 지식재산 법률용어를 대상으로 목표언어로의 번역과정에서 어떠한 번역전략이 적용되었는지를 단정적으로 범주화하는 것이 자연과학적 방법론과 같이 정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대체로 하나의 코퍼스 내에서 적용된 번역전략을 일관성 있게 분석한다면, 주어진 코퍼스에 대하여 적어도 번역전략에 대한 적용이 이루어지는 경향이나 추세를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자료가 될 것이다.

[표 1] 적용된 번역전략의 분석

[Table 1] Analysis of Translation Strategies Applied



지식재산 법률용어 사전에 등재된 전체 표제어들 전체 942개중 축어적 등가 전략이 599개로서 전체 표제어 중 63%를 차지하는데 이는 법률번역 분야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특허청의 지식재산 번역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지식재산의 번역원칙에 따르면, 지식재산 번역의 원문에 충실하고 명료성 및 일관성을 가지며 지식재산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 특히 원문의 충실성으로 원문의 번역용어가 원문의 용어에 가장 적합하여야 하고 법률용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보정을 할 경우, 쟁송의 위험성을 제시하고 있다[20]. 따라서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여 절반 이상의 표제어들이 법률 전문용어로서 축어적 등가전략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압류(provisional seizure),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각하(dismissal), 간접침해(indirect infringement), 감정(appraisal)등을 들 수 있다. 차용의 경우에는 주로 지명이나 인명이 적용된 법률, 계약, 협정서 등이 주를 이룬다. 가령,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Agreement), 마쿠쉬 청구항(Markush type claim), 마크맨 심리(Markman hearing)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한국어의 법률용어가 그대로 영어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한국어에 차용되어 사용되는 용어를 그대로 영어로 다시 번역한 경우라서 원래의 차용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표제어에 한글로 표기된 것을 영어로 표현한 것임으로 차용으로 분류한 것으로 총 14개로서 그 비중은 미미하다 할 것이다.

기술적 바꿔쓰기는 전문용어의 불일치로 인하여 목표언어의 화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능적인 등가가 없을 때에 비기술적인 용어(non-technical term)로 보다 넓은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21]. 본 사전에서는 출발언어의 표제어를 목표언어에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출발언어의 용례에 가까운 어휘로 바꾸는 기술적 바꿔쓰기 전략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총 942개중 196개의 기술적 바꿔쓰기 전략이 적용되었다. 이 전략은 비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목표언어에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갑호증(plaintiff's exhibit), 거래실정(course of trade), 문언적 의미(plain meaning), 기술 수준(state of the art), 등록가능통지(notice of allowance)를 들 수 있다.

어휘적 확장은 법률적 전통이 다른 법률용어의 경우, 번역 시에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어휘를 추가하는 전략이다. 어휘적 확장은 자연적인 등가가 아니라, 출발언어에서 의미하는 개념이 목표언어 체계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휘적 확장을 통해 목표언어의 법률체계에서 비롯된 개념을 수정하여 인위적으로 출발언어의 개념에 대응시키는 것이다[22]. 본 연구에서는 어휘적 확장의 개념을 확대 적용하여 기능적 등가를 추구하기 위하여 출발언어의 표제어에 번역과정에서 어휘를 추가한 경우, 어휘적 확장 전략을 적용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어휘적 확장은 전체 표제어 942개중 34개로 그 적용된 용례가 소수에 불과하다. 어휘적 확장의 예로서는 고소(criminal complaint), 설정등록(registration for establishment of rights), 출원일(application filing date), 출원일자의 회복(request to restore filing date), 특허결정(decision to grant patent)를 들 수 있다.

치환 역시 번역과정에서 문법 범주의 변환을 가리키는데, 한국어의 경우 명사의 나열과 같은 복합명사를, 영어에서는 주로 전치사를 이용하여 품사를 변경하였다. 이는 복합명사를 영어로 번역할 때에 전치사, 관사 등을 사용하여 명사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규정한 법령 영문 번역기준과 일치하는 번역방식이다[23]. 다만 이 전략이 적용된 용례가 역시 38개로 소수임을 보여준다. 이 번역전략의 예로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against public order or good morals), 권리범위확인심판(administrative trial to confirm scope of rights), 배경기술 기재의무(duty to state technology used for the invention), 보정명령(order to make an amendment), 외관유사(similarity in appearance)를 들 수 있다. 변조의 경우에는 유일한 사례로 경험법칙(rule of thumb)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법률용어로 한국어 법률용어의 표제어로 기재되었지만, 그 용어가 법률용어로 규정하기에는 일반 용어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렇게 변조 번역전략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능적 등가로는 결정계 심사(ex parte reexamination), 결정계 절차(ex parte prosecution), 공동심판청구(joinder of petition for trial), 기판력(res judicata), 당사자계 심판(inter partes review), 반대신문(cross examination)과 같이 출발언어와 목표언어에서 출발언어에서 축어적 등가가 아니라, 목표언어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법률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법률용어가 존재함에 따라 적용된 경우이다. 또한 몇몇의 경우에는 라틴어에서 비롯된 법률용어들이 이 범주에 속하는 바, 이 용어들의 보편적인 법률개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60개로서 7%를 차지한다. 따라서 지식재산 법률용어 사전에 등재된 전체 표제어들 중 기술적 바꿔쓰기와 축어적 등가가 전체의 84%를 차지함으로써 출발언어를 지향하는 형식적 등가와 목표언어를 지향하는 역동적 등가라는 양극단 중에서 법률번역의 특성을 반영한 형식적 등가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에서 발간한 지식재산 법률용어 사전을 코퍼스로 설정하여 지식재산 법률 전문용어의 번역에 적용된 각 번역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법률번역에서의 번역전략도 일반적인 번역의 전략, 즉 출발언어에서 목표언어에 이르는 의미의 재조정을 위한 전략, 기제라는 점은 일반 번역에서의 번역전략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지식재산 번역은 특허를 포함하여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법률의 번역이라는 특수한 영역의 번역이므로 특수한 분야의 특징적인 전문용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과 동시에 해당 분야의 전문용어에 대한 번역전략도 중요성을 지니며, 법률번역에 특수한 번역전략이 적용되는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로서 지식재산 법률용어들의 번역전략으로는 기술적 바꿔쓰기와 축어적 등가가 다수를 차지하며, 이는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용어들에 대한 번역의 형식적 등가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식재산 번역이 상품, 제품 기술과 관련된 전문용어, 특허 및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상 특허 및 지식재산권 등록 절차나 쟁송진행과 관련되는 절차법에 대한 전문용어가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이러한 전문용어의 번역전략에는 축어적 등가가 적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법률 전문용어의 번역과정에서 목표언어 내에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립적, 일반적 개념을 가진 어휘를 바꿔서 기술하거나 정의하는 기술적 바꿔쓰기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의 지식재산 번역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번역원칙에서도 원문의 충실성을 강조한 바, 이 역시 특허 및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번역에 있어서 축어적 등가를 지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지식재산 법률 전문용어의 번역전략에 대한 연구는 지식재산 법률 전문용어의 번역과정에 있어서의 지침일 뿐만 아니라 번역이 이루어지는 결과에 대한 분석도구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출발언어와 목표언어의 언어적 차원, 법률적인 관할권역을 달리 하는 두 개별언어의 법률체계 차원에서 특허 및 지식재산 관련 법률용어로 구성되는 출발언어와 목표언어로 구성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활용은 법률번역의 명료성, 일관성 그리고 이해가능성을 제고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번역전략들은 지식재산 법률 전문용어의 번역 과정과 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도구가 될 것이며, 증가일로에 있는 한국어와 영어, 또는 영어와 한국어의 지식재산 법률 전문용어의 정확한 번역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B. A. Garner, *Black's Law Dictionary*, Thomson Reuters, p.962, (2003)

- [2] D. Cao, *Translating Law, Multilingual Matters*, p.23, (2007)
- [3]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Guideline for intellectual property translation*, p.17, (2010)
- [4]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orea ranking the 4th in PCT in 3 consecutive years*, (2021)
Available from: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19698&aprchId=BUT0000029&sysCd=SCD02>
- [5] D. Belcher, A. Johns, B. Paltridge, *New Directions in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Research*,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133, (2011)
- [6] T. Dudley-Ecans, M. J. St John, *Developments in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p.48, (1986)
- [7] S. W. Kim, J. W. Kim, *The Translation Type and Methodology of Technical Terms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Medical Ones*,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2011), Vol.12, No.2, pp.33-52.
DOI: <http://dx.doi.org/10.15749/jts.2011.12.2.002>
- [8] S. J. Kim, D.Y. Jeong, *A Study on the Microstructure of Terminological Diction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01), Vol.35, No.1, pp143-162.
Available from: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JAKO200111921730252&SITE>
- [9] Y. S. Jo, *Patent Law*, Bakyoungsa, p.1, (2015)
- [10] D. Burk, J. Reyman, *Patent as Genre: A Prospectus*, *Law and Literature*, (2014), Vol.26, No.2, pp.163-190.
DOI: <http://dx.doi.org/10.1080/1535685X.2014.888193>
- [11] P. Newmark, *A Textbook of Translation*, Prentice Hall, p.151, (1988)
- [12] J. J. Yoo, *Determining Equivalents in Legal Translation Based on Comparative Law Methodology: Focusing on teok-su-gwan-gye-in in Korean law*,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2020), Vol.24, No.4, pp.63-95.
DOI: <http://dx.doi.org/10.22844/its.2020.24.4.63>
- [13] J. M. Seo, *A Study on the Translation of Terminology in Legal Translation*, *The Mirae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2013), Vol.18, No.2, pp.107-144.
UCI: G704-SER000001937.2013.18.2.015
- [14] S. Sarcevic, *New Approach to Legal Transl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pp.251-259, (1997)
- [15] E. Varó, B. Hughes, *Legal Translation Explained*, St. Jerome Publishing, pp.181-183, (2002)
- [16] V. Janulevičienė, S. Rackevičienė, *Translation Strategies of English Legal Terms in the Bilingual Lithuanian and Norwegian Law dictionaries*, *Socialinių Mokslų Studijos Societal Studies*, (2011), Vol.3, No.3, pp.1073-1093.
Available from: <https://repository.mruni.eu/handle/007/11030>
- [17] <https://ko.wikipedia.org/wiki>, June 25 (2023)
- [18] A. Jopek-Bosiacka, *Comparative law and Equivalence assessment of system bound terms in EU legal translation*, *Linguistica Antverpiensia, New Series-Themes in Translation Studies*, (2013), Vol.12, pp.119-120.
DOI: <https://doi.org/10.52034/lanstts.v12i.237>
- [19]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orean-English / English-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aw Dictionary*, (2017)
- [20]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Guideline for intellectual property translation*, p.31, (2010)
- [21] S. Sarcevic, *New Approach to Legal Transl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p.252, (1997)
- [22] S. Sarcevic, *New Approach to Legal Transl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p.251, (1997)
- [23]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Standards for English Translation of Law*, p.16, (2016)